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19가단52509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879,204원 및 그 중 156,633,099원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2. 14.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1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5.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5. 6. 25.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153,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9. 8. 2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은 보증채무이행금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위변제금에 대한 원고 소정의 약정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로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7. 4. 주식회사 E에 대출원리금 합계 156,633,0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9. 8. 22. 기준 대위변제원금 156,633,099원, 추가보증료 108,140원, 가지급금 3,137,965원이 존재한다.

마. 피고 B은 2019. 1. 14.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 14. 접수 제153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879,204원(= 대위변제원금 156,633,099원 + 추가보증료 108,140원 + 가지급금 3,137,965원) 및 그 중 156,633,09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0. 2.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피고 D과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9. 1. 14.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아직 실제로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4. 6.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8. 12. 20.경부터 대출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9. 7. 4.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참조).

2) 갑 제6, 9 내지 14,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일에 가까운 2018. 11. 기준 시가 약 48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2017. 9. 25. 매매대금 총 53,000,000원에 매수한 광주시 F 답 41㎡, G 답 95㎡, 2019. 1. 25. 매매대금 총 8,000,000원에 매도한 아산시 H 전 72㎡, I 전 1㎡가 있었던바, 적극재산의 총합계액이 541,000,000원(= 480,000,000원 + 53,000,000원 + 8,000,000원)이었던 점,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기업은행에 639,562,000원, J은행에 583,341,000원, K조합에 552,500,000원, L은행에 327,270,000원, E은행에 246,688,000원, 신용보증기금에 1,248,080,155원, M은행에 277,296,000원, N에 1,000,000,000원, O에 13,092,000원, 원고에 대하여 153,000,000원의 각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소극재산의 총합계액이 5,040,829,155원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B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위 및 실제 사업자금에 사용된 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진행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회사의 주주가 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지현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건물의표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15층 호 83.1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대 4444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44447.6분의 36.32

